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대미투자는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안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투자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산업통상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업관리위원회에서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법적 사항을 검토한 후, 재정경제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에서 대미투자 사업을 최종 선정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15조까지).
- 전략적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자본금 규모를 2조원으로 하여 정부가 출자하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39조까지).
- 전략적투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미전략투자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공사 출연금,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

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투자, 조선협력투자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 운영위원회가 대미투자 후보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의사를 심의·의결한 경우,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개시하기 이전에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함(안 제50조).

II.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제명 수정

제정안은 제명을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으로 하고 있으나, 법령에서 사용하는 국가의 명칭은 정식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안의 입법배경이 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서도 국가의 정식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안 제명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으로 수정함.

[수정의견]

제 정 안	수 정 의 견
<u>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u>	<u>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u>

2.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정의조항(안 제2조제7호)

안 제2조제7호의 “대한민국 국민” 정의 조항은 안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7조제1항제4호의 대미투자 사업에 참여할 대한민국 국민인 사업자(벤더 및 공급업체) 및 프로젝트 매니저에 국내법인 등이 미국 등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한 외국 법인·단체도 참여시킬 입법 취지로 대한민국 국민의 범위를 일반 입법례와 달리 확장시키고 있음.

그러나, 법안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표현은 안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7조제1항제4호 외에도 안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안 제27조(위원의 결격사유)에도 사용되고 있어서,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나 공사의 임원 자격으로 외국 법인·단체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대강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안 제2조제7호의 “대한민국 국민” 정의 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 외국 법인·단체의 대강을 법률에 명시하는 동시에 안 제9조 및 안 제27조에 따른 결격사유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정의 조항과 달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 한정하는 것으로 별도로 규정하였음.

[수정의견]

제 정 안	수 정 의 견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6. (생략)	1. ~ 6. (생략)
7. “대한민국 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다.	7. ----- ----- ----- <u>단체(이하 “내국법인등”이라 한다)</u> --. ----- <u>법령-- 내국 법인등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u> -----.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회 및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 ----- ----- -----.
1. <u>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u>	1. <u>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아닌 사람</u>
2. (생략)	2. (생략)

3.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대미투자의 추진 및 국회 상임위 동의 절차(안 제4조제3항)

안 제4조제1항은 한국이 투자하기로 약정한 2,000억 달러의 대미투자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 확보 원칙”을 명시하되, 안 제4조제3항에서는 그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대미투자 사업의 제

안 또는 추진에 대한 상임위원회(재경경제기획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다만, 안 제50조제1항1)에 대미투자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 후 미국과 협의를 개시하기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강제하는 규정이 이미 있으므로 안 제4조제3항 중 보고 부분은 안 제50조제1항의 내용과 중복되고 있고, 문언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주체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과의 관계에서 상임위 동의 시점 등이 불분명한 문제가 있음. 안 제4조제3항 중 “보고”에 관한 부분은 삭제하고, 안 제4조제3항에서 “정부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수정함.

[수정의견]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제4조(대미투자 등의 원칙) ①·② (생략) ③ 정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u>경우</u> ,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투자를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u>운영위원회가</u> 제1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미투자 후보사업에	제3조(대미투자 등의 원칙) ①·② (생략) ③ ----- ----- ----- <u>때에는</u> ----- ----- ----- <u>정부</u> <u>는</u> 제1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미투자 후보사업에 대

- 1) 제50조(국회에 대한 사전 보고) ① 운영위원회가 제1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의사를 심의·의결한 경우, 정부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미국과 협의를 개시하기 전에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u>대한 사업 추진의사를 심의·의결하고, 정부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미국과 협의를 개시하기 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이를 보고하고, 사업의 제안 또는 추진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u> ④ · ⑤ (생략)	<u>한 사업 추진 의사에 대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미국과 협의를 개시하기 전에 대미투자 사업의 제안 또는 추진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u> ④ · ⑤ (생략)
--	--

4. 임직원의 비밀 누설 금지(안 제33조제3항)

안 제33조제3항은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임직원에게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데, 해당 내용은 안 제46조제5호와 중복된 내용이고 안 제53조제1항에 따라 안 제46조를 위반한 사람을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²⁾ 안 제33조제3항은 삭제함.

[수정의견]

제정안	수정의견
제33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① · ② (생략) ③ 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	제33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 · ② (원안과 같음) <삭제>

2) 제46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공사의 임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제53조(벌칙) ① 제46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관련 조문 정리(안 제41조제2항)

안 제41조는 전략적투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안 제41조제1항), 그 재원으로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

안 제41조에서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재원에 관한 사항과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하는 사항은 상호 구별되는 내용으로서 조문체계를 분리할 필요가 있고, 안 제4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은 한미전략투자채권에 대한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요구(제1호), 특수채증권 간주(제2호), 하위법령 위임(제3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내용상 하나의 항에 각 호로 규정할 사항은 아니므로, 한미전략투자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법제 원리에 맞게 안 제42조를 신설하여 별도로 규정함.

[수정의견]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제41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사의 출연금 2. 위탁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사전 동의를	제41조(기금의 재원) (원안 제1항과 같음)

얻은 위탁자산

3. 제2항에 따른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4. 정부로부터의 차입금
5.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6. 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② 공사는 전략적투자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한미전략투자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공사가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매회 그 금액·조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3.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2조(한미전략투자채권의 발행)

① (원안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과 같음)

<후단 삭제>

② (원안 제41조제2항제1호와 같음)

③ (원안 제41조제2항제2호와 같음)

⑤ (원안 제41조제2항제3호와 같음)

④ (원안 제41조제3항과 같음)

6. 이 법 시행 전 준비행위 등에 대한 면책 특례(안 부칙)

안 제51조에서는 공무원 등이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도록 규정함. 이는 이 법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그런데, 이 법의 시행 전에 이 법에 따른 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사항에 대한 예비적 검토 등 이 법의 시행 준비와 관련한 공무원 등의 적극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않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기에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부칙에 면책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음.

제 정 안	수 정 의 건
	부 칙
<신 설>	<u>제5조(면책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제7조제1항 각 호의 검토를 위한 예비적 검토, 이 법에 따른 미국과의 협의를 위한 예비적 협의 등 이 법의 시행 준비와 관련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사람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감사원법」 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문책 또는 그 요구를 하는 경우에도 제52조를 적용한다.</u>

그 밖에 제정안에 대한 체계·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수석전문위원 심 정 회)